

제 3장 운영

제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은 79인을 정원으로 한다.
-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 ③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 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9조(이용대상) 남양주삼성요양원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

제10조(이용신청) ① 남양주삼성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대기자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제11조(급여계약)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남양주삼성요양원은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 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5조(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16조(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남양주삼성요 양원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20% (30일기준)	84,240원	2,527,200원	2,021,760원	505,440원	862,440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1,875,600원	468,900원	825,900원
	3등급		73,800원	2,214,000원	1,771,200원	442,800원	799,800원
	4등급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남양주삼성요 양원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12% (30일기준)	84,240원	2,527,200원	2,223,936원	303,264원	660,264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2,063,160원	281,340원	638,340원
	3등급		73,800원	2,214,000원	1,948,320원	265,680원	622,680원
	4등급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남양주삼성요 양원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8% (30일기준)	84,240원	2,527,200원	2,325,024원	202,176원	559,176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2,156,940 원	187,560원	544,560원
	3등급		73,800원	2,214,000원	2,036,880 원	177,120원	534,120원
	4등급						

20

②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